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 . . (제 회)	

검 사 의 수 사 개 시 범 죄 범 위 에
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법무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2022년 개정 「검찰청법」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기존 부패, 경제, 공직자, 선거, 방위사업, 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, 경제 범죄로 축소되었음에도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「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」상의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되어 상위법인 「검찰청법」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므로, 부패·경제 등 범죄로 한정된 「검찰청법」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‘중요 범죄’ 분류 개편(안 제2조)

- 1) 현행 규정은 부패, 경제 등 범죄에 관하여 별표를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으므로, 「검찰청법」 개정 취지에 맞추어 부패, 경제 등 범죄에 해당하는 중요 범죄 유형을 새롭게 한정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남용을 방지
- 2) 기존의 별표 인용 방식 대신 안 제2조 각 호의 각 목에 범죄 유형을 명시

나.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인 「검찰청법」 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 규정(안 제3조)

- 1) 「검찰청법」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“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”의 범위를 1인이 범한 수죄(數罪), 수인(數人)이 공동으로 범한 죄,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
- 2) 사법질서저해 범죄는 기본 형법 및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 죄명(부패, 경제 관련)에 대한 무고 가중처벌, 보복 범죄에 한정하여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것으로 축소

다. 경과규정(부칙)

- 1) 공포 즉시 시행(부칙안 제1조).
- 2) 시행 이후 수사개시 사건부터 적용하고, 시행 전에 「검찰청법」 및 이 영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 개시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개시 가능하도록 함(부칙안 제2조)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중요 범죄) 「검찰청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제1호가
목에서 “부패범죄,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”란 다
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.

1. 부패범죄: 다음 각 목의 죄

가. 공무원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
관의 임직원 등으로서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
당하는 사람(이하 이 목에서 “주요공직자”라 한다)이 범한 「형
법」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및 그 죄의 뇌물에
대하여 주요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범한 같은 법 제133조에 해당
하는 죄

나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·제3조·제5조에
해당하는 죄 및 같은 법 제2조의 뇌물에 대한 「형법」 제133조
에 해당하는 죄

다. 「변호사법」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

라. 「공직선거법」 제230조부터 제233조까지, 제235조, 제255조제1

항제10호(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), 같은 조 제3항제2호, 같은 조 제6항 및 제257조에 해당하는 죄

마. 「정당법」 제50조에 해당하는 죄

바. 「정치자금법」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사. 「의료법」 제88조제2호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「약사법」 제94조제1항제5호의4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「의료기기법」 제52조 제1항 제1호의4, 제1호의7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아. 「형법」 제357조에 해당하는 죄

자.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죄

차.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39조 및 제40조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카. 「상법」 제630조에 해당하는 죄

타. 「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」 제3조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2. 경제범죄: 다음 각 목의 죄

가.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[「형법」 제347조, 제347조의2, 제351조(같은 법 제347조 또는 제347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),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]에 해당하는 죄

나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해당하는 죄

다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(「조세범 처벌법」 제3조제1항 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02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)에 해당하는 죄

라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마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49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,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죄

바.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사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643조부터 제646조까

지, 제655조 및 제656조에 해당하는 죄

아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자. 「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차.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58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카.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타.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파. 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하. 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

를 포함한다)

거. 「대외무역법」 제53조, 제53조의2, 제54조 및 제5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너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더.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러.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50조에 해당하는 죄

머. 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버.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서.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어. 「특허법」 제225조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저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0조의 2, 제7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처. 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죄

커.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해당하는 죄

터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죄

피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(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·소유의 경우로 한정한다)에 해당하는 죄

허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8조, 제58조의2,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에 해당하는 죄(마약류를 단순 소지·소유·사용·운반·관리·투약·보관한 범죄는 제외한다) 및 「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

고. 「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, 제3조, 제3조의2, 제4조 및 제5조까지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노. 「의료법」 제87조, 제8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

우를 포함한다)

도. 「형법」 제114조에 해당하는 죄(가목부터 노목까지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: 다음 각 목의 죄

가. 「형법」 제145조부터 제148조에 해당하는 죄

나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9 및 제14조(같은 법 중 이 영에 따른 중요 범죄에 대하여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)에 해당하는 죄

다.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범죄에는 상습범, 미수범 및 예비·음모로 처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)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“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”란 같은 호 가목·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(이하 “해당 범죄”라 한다)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.

1. 「형사소송법」 제11조 각 호에 따른 관련사건. 다만,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1인이 범한 수죄(數罪)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되, “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” 중 “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있는

범죄”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와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를 포함한다.

가. 해당 범죄와 동종범죄

나.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,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

2. 「형사소송법」 제208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범죄

3. 「형법」 제19조에 따른 독립행위로서 경합하는 범죄

4. 해당 범죄에 대한 무고죄

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영 시행 전에 검사가 「검찰청법」 제4조제1항제1호 가목, 나목 및 이 영에 따라 개시하여 수사 중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「검찰청법」 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범죄로 보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중요 범죄) 「검찰청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 항제1호가목에서 “부패범죄, 경 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”란 다음 각 호의 범 죄를 말한다.		제2조(중요 범죄) 「검찰청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 항제1호가목에서 “부패범죄, 경 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”란 다음 각 호의 범 죄를 말한다.		
1. 부패범죄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 표 1에 규정된 죄		1. 부패범죄: 다음 각 목의 죄		
가.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 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		가. 공무원, 「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으로서 「공직자윤리 법」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이 목 에서 “주요공직자”라 한 다)이 범한 「형법」 제12 9조부터 제133조까지에 해 당하는 죄 및 그 죄의 뇌물 에 대하여 주요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범한 같은 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		
나.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 죄		나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」 제2조·제 3조·제5조에 해당하는 죄 및 같은 법 제2조의 뇌물		
다.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범죄				
2. 경제범죄: 생산·분배·소비 · 고용·금융·부동산·유통 · 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 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				

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서
별표 2에 규정된 죄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죄

가. 무고·도주·범인은닉·
증거인멸·위증·허위감
정통역·보복범죄 및 배심
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
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
범죄로서 별표 3에 규정된
죄

나.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
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
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
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

에 대한 「형법」 제133조
에 해당하는 죄

다. 「변호사법」 제109조부
터 제111조까지에 해당하
는 죄

라. 「공직선거법」 제230조
부터 제233조까지, 제235
조, 제255조제1항제10호
(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
3호까지를 위반한 경우로
한정한다), 같은 조 제3항
제2호, 같은 조 제6항 및
제257조에 해당하는 죄

마. 「정당법」 제50조에 해당
하는 죄

바. 「정치자금법」 제45조부
터 제49조까지에 해당하는
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
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처
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사. 「의료법」 제88조제2호
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
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
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
를 포함한다) 및 「약사
법」 제94조제1항제5호의4

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「의료기기법」 제52조 제1항 제1호의4, 제1호의7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 아. 「형법」 제357조에 해당하는 죄
 자.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죄
 차.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39조 및 제40조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 카. 「상법」 제630조에 해당하는 죄
 타. 「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」 제3조에 해당하는

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
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처
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2. 경제범죄: 다음 각 목의 죄

가.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
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[「형법」 제347조, 제347
조의2, 제351조(같은 법 제
347조 또는 제347조의2의
상습범으로 한정한다), 제3
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를
범한 경우로 한정한다]에
해당하는 죄

나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
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
해당하는 죄

다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
에 관한 법률」 제8조
(「조세범 처벌법」 제3조
제1항 또는 「지방세기본
법」 제102조제1항의 죄를
범한 경우로 한정한다)에
해당하는 죄

라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
에 관한 법률」 제443조부
터 제446조까지에 해당하

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마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49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,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죄

바.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사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643조부터 제646조까지, 제655조 및 제656조에 해당하는 죄

아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자. 「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

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
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
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
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
포함한다)

차.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
률」 제58조 및 제59조에
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
에 대하여 같은 법 제65조
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
포함한다)

카.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
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
한 특별법」 제15조의2제1
항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
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
1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
우를 포함한다)

타.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
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
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
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
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
포함한다)

파. 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
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

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하. 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거. 「대외무역법」 제53조, 제53조의2, 제54조 및 제5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너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더.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

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러.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50조에 해당하는 죄

며. 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버.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서.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어. 「특허법」 제225조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저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0조의2, 제7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죄(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

처. 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죄

커.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해당하는 죄

터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죄

퍼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(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·소유의 경우로

한정한다)에 해당하는 죄
허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
률」 제58조, 제58조의2,
제59조부터 제64조까지에
해당하는 죄(마약류를 단
순 소지·소유·사용·운
반·관리·투약·보관한
범죄는 제외한다) 및 「마
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
한 특별법」 제6조부터 제
1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
고. 「보건범죄 단속에 관한
특별조치법」 제2조, 제3
조, 제3조의2, 제4조 및 제
5조까지에 해당하는 죄(그
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
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는
경우를 포함한다)
노. 「의료법」 제87조, 제87
조의2제2항제1호 및 제1호
의2에 해당하는 죄(그 위
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
제91조에 따라 처벌받는
경우를 포함한다)
도. 「형법」 제114조에 해당
하는 죄(가목부터 고목까

지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: 다음 각 목의 죄

가. 「형법」 제145조부터 제148조에 해당하는 죄

나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9 및 제14조(같은 법 중 이영에 따른 중요 범죄에 대하여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)에 해당하는 죄

다.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범죄에는 상습범, 미수범 및 예비·음모로 처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
제3조(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)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“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”란 같은 호 가목·나목의 범죄 및

<신 설>

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(이하 “해당 범죄”라 한다)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.

1. 「형사소송법」 제11조 각 호에 따른 관련사건. 다만,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1인이 범한 수죄(數罪)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되, “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” 중 “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”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와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를 포함한다.

가. 해당 범죄와 동종범죄

나.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,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

2. 「형사소송법」 제208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범죄

3. 「형법」 제19조에 따른 독립행위로서 경합하는 범죄

4. 해당 범죄에 대한 무고죄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무부 검찰과	
연 락 처	(02) 2110 -